

대한민국 “서울교통공사” 와 몽골-러시아 주식회사 “울란바토르 철도” 간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

몽골-러시아 합자 회사 “울란바토르 철도” 와 대한민국의 “서울교통공사” 회사는 (이하 “양측” 이라 함),

상호 존중과 공동 이해의 원칙을 바탕으로, 양측의 장기 경제 발전 목표를 위해 대중교통 분야에서 동등하고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, 몽골-러시아 합자 회사 “울란바토르 철도” 와 “서울교통공사” 회사 간의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합의한다.

제1조 목적

1. 대중교통 분야의 정보,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여 투자 기회를 조사·연구 함으로써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한다.
2. 양측 간 대중교통 계획 및 관리, 역량 강화, 컨설팅, 연구 및 지식 교환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.

제2조 협력의 범위

협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대중교통 부문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;
2. 대중교통 분야의 정보,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양측 간 동등하며 상호 유익한 협력의 증진;
3. 대중교통 분야의 훈련, 연구 및 경험의 교환, 공동 프로젝트의 이행;
4. 대중교통 서비스 관리 및 고객 관리 개선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;
5. 철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및 노동 안전에 관한 경험을 교환.

제3조 협력의 형태

본 양해 각서에 따른 협력 형태 (이하 “MOU” 참조)는 다음과 같다;

1.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;
2. 대중교통 분야의 고급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;
3. 대중교통 분야 전문가, 연구원, 엔지니어 및 기술자의 훈련 및 교환;
4.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;

5. 대중교통 분야의 노하우와 개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조직과 협력 회의, 기술 세미나, 산업 기술 프로그램 및 전시회 참여를 장려한다.

제4조 시행체제

1. 이 양해 각서는 양측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(제4조5항은 예외)
2. 양측이 합의를 구체적으로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측은 본 양해 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.
3. 양측은 공동으로 결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협력 및 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 할 수 있다.
4. 생성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양 당사자 간에 상호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.
5. 양측은 이 양해 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쪽으로부터 얻은 지식 또는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.

제5조 협의

1. 양측은 이 양해 각서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양 측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최하며, 협력 및 상호 신뢰의 정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약 또는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.

제6조 발효

1. 이 양해 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새로운 양해 각서가 수립 될 때까지 유효하다.

이 양해 각서는 2019년 8월에 서명되었으며 몽골어,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동등하게 정본으로 작성되었다. 이 양해 각서의 규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이 우선한다.


몽골-러시아 합자 회사
울란바토르 철도


대한민국
서울교통공사